

'94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심사보고서

1992. 12. 23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. 12. 23.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3. 12. 23

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정기회 제6차위원회(93. 12. 23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김영찬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'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을 승인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1) 대부 1필지

소재지	지목	지적(m ²)	대부시기	대부사유
염리동 83-3	건물	192.07	상반기	국유 재산법 제24조1항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진재)

염리동 83-3소재 대부재산 1필지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등에 의거 대부하는 재산으로 구 염리동사무소 청사1층을 염산파출소로 사용코자 마포경찰서장이 신청하는 재산으로 동 대부재산의 당해지역 주민의 편의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(윤정용 위원) : 위건물의 대부에 관하여 구의원, 주민여론등을 청취한적 있는가?

○ 답변(가정복지과장 임상화) : 여론은 듣지 못하고 염산파출소, 노인정이 도로개설로 철거되어 총무과와 협의하여 결정했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.

'94.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266	제출일자 : 1993년 12월 23일 제출자 : 마포구청장
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개정사유

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1) 대부 1필지

소재지	지목	지적(m ²)	대부시기	대부사유
염리동 83-3	건물	192.07	상반기	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

(다음 「페이지」에 계속)

'94. 공유재산관리계획
'9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
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무상사용 및 대부허가	계	1	192.07	25,929			1	192.07	25,929	
	토지									
	건물	1	192.07	25,929			1	192.07	25,929	
	기타									

'94. (무상)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	재산가액	허가기간	무상대부(사용허가)근거	비고
	종 별	소 재 지	지목, 구조	수 량				
1	행정재산	염리동 83-3	건물/평스라브	192.07	25,929	'94.1.1.~ '96.12.31.	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항	

관리계획(무상대부)재산내용

1. 재산의 표시

소재지	지목	면적(m ²)	대부신청자 주소 및 성명	비고
염리동 83-3	건물	192.07	아현동 618-1 마포경찰서장	대부 기간 (3년)

2. 재산의 현황

○ 위치 : 승문중·고 윗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염리동 청사임.

○ 사용목적 : 구 염리동청사 (2층)중 1층을 염산파출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안녕과 질서를 유지토록 하기 위함.

3. 관련법규 : 재방재정법 제82조, 마포구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11조, 제12조, 제13조

4. 사용료 : 면제(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항)

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(안) 심사보고서

1993. 12. 22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. 11. 18. 송윤석 의원의 10인

나. 회부일자 : 1993. 11. 18.

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정기회 제5차 위원회 (93. 12. 22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 설명자 : 송윤석 의원)

가. 제출이유

○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주택의 밀집화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에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급수문제가 현조례에 묶여 1주택에 1양수기밖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, 주민들의 급수사용료 배분문제등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는 바,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의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